

업라이즈투자자문 「투자자문계약서」 개정안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조~6조 (생략)	제1조~6조 (현행과 같음)	
(신설)	<p><b>제7조 (자문결합계좌를 통한 구매의사의 전달)</b></p> <p>① 고객은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(이하 "자문결합계좌"라 한다)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.</p> <p>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의사를 전달할 시에 금융투자상품의 종류, 수량, 가격, 매매방법, 매매시기 등을 정하여 회사에 요청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고객의 구매의사 전달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 매매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매매거래 성립 시, 회사는 다음의 매매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융투자상품의 종목, 수량 및 매도·매수의 구분 등 고객의 매매주문내역</li> <li>2.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, 금융투자회사명,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</li> </ol>	자문결합계좌를 통한 구매의사의 전달 기능 신설
제7조~제13조 (생략)	제8조~제14조 (현행과 같음)	조문 번호 순연
<p><b>제14조 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</b></p> <p>회사는 천재지변,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<b>제15조 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</b></p> <p>회사는 천재지변,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등 <b>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</b>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협회 검토의견 반영
<p><b>&lt;별지&gt; 세부계약조건</b>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10. 기타특약사항</p>	<p><b>&lt;별지&gt; 세부계약조건</b>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10. 제17조제2항의 "&lt;별지&gt;에서 정하는" 연체이자 : 9.9%</p> <p>11. 기타특약사항</p>	협회 검토의견 반영
부칙 (신설)	부칙 이 약관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	